



헌장사의 항의 신청절차

지구총재/지구부총재 선거항의 이외의 헌장관계 불만

국제헌장 및 부칙, 혹은 국제이사회가 간헐적으로 채택하는 방침이나 절차를 적용 혹은 해석 및 위반상 야기되는 모든 항의, 요구 및 불만을 통틀어 “항의”라 칭하며, 헌장 및 부칙, 이사회방침서, 국제이사회가 수시로 채택하는 기타 방침 및 절차를 해석하고, 강제집행하며, 그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선언하는데 따른 항의는 다음 절차에 따라 먼저 제출되어 결정된다. 어느 클럽이든지 별도 규정 하에 고찰되는 지구총재 선거에 관계되는 항의 이외의 항의를 제출할 경우 각 절차를 밟아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항의 처리에서 제외되며 항의에 관련된 헌장 및 부칙, 이사회방침 혹은 국제이사회가 이따금 채택하는 방침이나 절차상의 소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한 내 다음 항의 단계를 밟아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항의에 관계되는 사항은 종료되고 이전 단계 결정에 근거를 두고 구속력을 발휘한다

항의 제 1 단계

국제협회 내 곧 스탠딩 클럽(“항의자”) 만이 본 항의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지구총재에게 요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 신청서는 분쟁에 관련된 사건이 발생한 날 또는 본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항의서는 문제내용 및 이에 대한 조치를 기술하도록 한다. 지구총재 또는 그의 대리인은 “답변자”로 칭하는 항의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된 자와 국제협회에 항의서 사본을 제공하며 답변자에게 화해를 제안하고 항의서를 인수한 후부터 30 일 이내에 항의를 검토하고 조정을 시도한다. 항의자가 화해를 거부할 경우, 항의 및 관련사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구는 항의 조정을 위해 전력을 다한다. 조정이 성공적이지 못할 경우, 지구는 조정실패를 문서화하여 항의자, 답변자 그리고 국제협회에 통지하며 조정실패 통지서를 항의자와 국제협회에 제공한다.

항의 제 1 단계에 따른 항의는 수수료로 US\$250.00 혹은 그에 상응하는 자국통화를 항의 제출 시에 지구총재에게 제출해야 한다. 중재인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분쟁이 해결되거나 항의가 취소되는 경우 US\$100.00 를 사무 수수료로 지구에 보유하고 US\$75.00 를 항의자에게 반환하며 US\$75.00 는 응답자에게 지불한다. (응답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인원수대로 균등하게 분배한다). 항의 제 1 단계에 의한 기간 내에 화해, 기각, 항의를 지지 혹은 거부할 경우(정당한 이유로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 자동적으로 수수료 전액을 사무 수수료로 지구에 보유하고 관계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본 항의처리 절차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지구의 헌방침에 본 항의 처리절차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전액을 항의 관계자간에 균등하게 지불할 것이라고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지구가 책임진다.

항의 제 2 단계

항의자가 항의를 계속하고자 할 경우, 지구로부터 조정실패 통지서를 접수한 후부터 10 일 이내 클럽이 소속한 복합지구로 서면 항의서를 제출한다. 본 항의서는 항의 이유와, 사실, 관련사정, 이에 대한 조치를 설명하도록 한다. 항의자는 항의서와 함께 서류 및 제출문서, 항의에 관련 또는 지지하는 진술서를 포함한 기타 서류를 제출한다. 항의서를 접수한지 15 일 이내에 복합지구협의회장이나 그의 대리인은 항의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된 답변자에게

항의서와 첨부서류를 제공하며 국제협회에 사본을 제공한다. 답변자는 그 후 45 일 이내 항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답변자의 답변은 진술서를 포함한 관계서류에 첨부된 항의서에 설명된 사실에 대변하며 적절하면 적당한 조치를 제안한다. 항의서에 대한 답변자의 응답서를 접수한 후부터 45 일 이내로 협의회회장은 항의서에 대한 조치를 실시할 최소한 3 명의 독립적인 위원회를 임명한다.위원회 위원은 문제가 발생한 관계자의 소속 클럽회원이 아닌 곧 스탠딩 클럽의 곧 스탠딩 회원인 前총재를 선호하며 중재인은 분쟁에 관해 편견이 없으며 분쟁관련자 쌍방에게 공정해야 한다. 중재인은 임명되는 즉시 본 절차에 따라 분쟁 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모든 권한을 가진다. 본위원회는 조사를 위해 항의자, 답변자, 혹은 항의의 수속에 무관한 사람으로부터 서류요청 및 증인으로 면담할 수 있으며 기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조사 종료 45 일 이내에 항의자 및 답변자로부터 제출문서를 조사하여 정보를 검토한다. 그 후 항의서에 야기된 문제를 해소하는 서면 복합지구 판정을 항의자와 답변자에게 통지하고 국제협회에 사본을 제공한다. 서면 복합지구 판정에는 의견을 달리하는 위원회 위원의 이견이 반영된 위원회 멤버 전원이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판정은 국제, 복합지구 및 지구현장 및 부칙상의 관련 조항, 국제이사회 방침과 일치해야 하며 국제이사회의 재량에 의해 혹은 그 대리인에 의해 재검토를 받는 조건으로 한다.

제 2 항의 단계에 따른 항의는 수수료로 US\$250.00 혹은 그에 상응하는 자국통화를 항의 시에 협의회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명된 위원회가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화해하거나 항의가 취소되는 경우 US\$100.00 를 사무 수수료로 복합지구에 보유하고 US\$75.00 를 항의자에게 반환하며 US\$75.00 는 응답자에게 지불한다. (응답자가 복수일 경우 인원수 대로 균등하게 분배한다). 지명된 위원회가 항의자 측의 항의에 근거가 있음을 발견할 경우, US\$100.00 를 사무 수수료로 복합지구에 보유하고 US\$75.00 를 항의자에게 반환한다. 항의가 무근임이 판명될 경우, US\$100.00 를 사무 수수료로 복합지구에 보유하고 US\$75.00 를 응답자에게 지불한다. (응답자가 복수일 경우 인원수 대로 균등하게 분배한다.) 본 항의절차에 의한 기간 내에 화해, 기각, 항의를 지지 혹은 거부할 경우(정당한 이유로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 자동적으로 수수료 전액을 사무 수수료로 복합지구에 보유하며 관계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본 항의처리 절차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복합지구의 현방침에 본 항의 처리절차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전액을 항의 관계자간에 균등하게 지불할 것이라고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복합지구가 책임진다.

항의 제 3 단계

항의자 혹은 답변자가 복합지구 판정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복합지구 판정을 접수한 후부터 30 일 이내로 문제내용과 희망조치를 설명하여 국제협회에 상소한다. 조치요청 대상자와 국제협회에 상소 통지서 사본을 제공한다.

항의 제 3 단계에 따른 항의는 US\$250.00 혹은 그에 상응하는 자국통화로 제소비용을 항의 제소 시에 국제본부 내 법률부로 제출해야 한다. 항의 제 3 단계 혹은 4 단계 아래 규정하는 통지서, 회의 혹은 판결 전에 분쟁이 해결되거나 항의자가 항의를 취소하는 경우 US\$100.00 를 행정비로 국제본부에 남기고 US\$75.00 를 항의자에게 반환하며 US\$75.00 는 응답자에게 지불한다. (응답자가 1 명 이상일 경우 동일한 액수로 분배한다). 항의 단계에 의한 기간 내 (정당한 이유로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 에 분쟁해소 실패, 항의자가 항의 기각, 항의를 지지 혹은 거부할 경우, 제소비용 전액을 국제본부 행정비로 자동 보유할 것이며 관계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본 상소는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 a. 국제협회가 상소 통지서를 인수한 후부터 30 일 이내에 항소자와 답변자간의 사실 조정회의를 주선한다. 본 회의는 국제협회 사무총장이나 그가 지명하는 기타 국제협회 직원이 진행한다. 답변자가 사무총장일 경우, 상소통지서를 국제협회의 집행임원 중 1 명에게 제출하여 그 임원이 사실 조사회의를 진행한다. 회의는 사무총장 또는 그의 대리인은 가능하면 상소통지서에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그 후 15 일 이내 사무총장이나 그의 대리인은 상소통지서에 제기된 문제가 항의자 혹은 답변자를 만족하도록 해소 못할 경우, 항의자, 답변자 그리고 국제협회에 상소 해소실패 통지서를 제공한다.
- b. 항의자 혹은 답변자는 상소 해소실패 통지서를 접수한 후부터 30 일 이내에 국제이사회 검토 및 조정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고찰, 판결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 c. **복합지구 현장상의 항의신청 절차**

협회 내 곧 스탠딩 복합지구는 항의를 제출할 수 있다. 항의는 항의이유와 사건발생을 인지 또는 인지했어야 할 30 일 이내에 국제이사회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항의서는 문제내용 및 이에 대한 조치를 기술하도록 한다. 복합지구는 검토 및 조정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검토 및 판단하도록 이사회에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검토 및 조정위원회 선정

검토 및 조정위원회 선정 및 조정위원회는 국제이사회의 현장 및 부칙위원회 이다. 본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문제조정을 위해 특별한 전문지식을 겸비한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소 해소실패 통지서를 접수한 후부터 45 일 이내 곧 스탠딩클럽의 회원을 2 명 추가할 수 있다. 검토 및 조정위원회의 멤버는 위원회의 기능을 통제할 수 있는 위원장을 선임한다. 그 기능은 의제결정, 회의일정 결정, 질서유지, 권고사항 고찰, 위원회멤버의 임무배정, 수속 관련문제 처리, 조정안 설명, 증인의 적성 및 숫자결정, 항의자 혹은 답변자에게 관련사항 설명 등이다

검토 및 조정위원회의 일정

검토 및 조정위원회 설정 이후 30 일 이내 본 위원회는 (a)검토 및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b)5 명의 위원회멤버 성명 및 직위, (c)항의자 및 답변자가 회의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 즉, (1)자신의 경비로 변호사를 대표할 기회, (2)회의 전에 문서 및 정보를 관람할 기회, (3)증거로 문서를 제출할 기회, (4)증인이 구두로 증언할 기회, (5)회의 중 구두로 자신의 입장을 변론할 기회, (6)검토 및 조정위원회 회의 전후에 변론을 문서로 제출할 기회, (7)상대측이 제출한 문서에 대변으로 문서를 제출할 기회 등을 항의자, 답변자, 그리고 국제협회에 통지한다.

검토 및 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권한

검토 및 조정위원회는 상소통지에 관하여 사실 및 사정을 고찰하고 기타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증인을 호출하며 문서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검토 및 조정위원회의 판정

검토 및 조정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항의자 및 답변자로부터 문서 변론을 접수한 후부터 60 일 이내 위원회는 문서로 판정을 내린다. 검토 및 조정위원회는 복합지구 판정을 확인, 번복, 혹은 수정 즉, 손해에 대한 배상 혹은 기타 보상금을 정하고 항의자나 답변자가 복합지구 판정 혹은 상소통지에 대한 기소나 변호상 야기된 적절한 변호사비 및 상대측의 경비를 지불할 것을 결정한다. 검토 및 조정위원회의 판정은 상소통지서에서 야기된 문제 이상을 다루지 않는다. 검토 및 조정위원회는 판정 사본을 항의자, 답변자 그리고 국제협회에 제공하도록 한다.

항의 제 4 단계

항의자 혹은 답변자가 검토 및 조정위원회의 판정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판정을 접수한 후부터 30 일 이내 국제협회의 국제이사회가 검토 및 조정위원회의 판정을 검토하도록 하는 요청서를 국제협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그 후 45 일 이내 항의자와 답변자는 동시에 문서에 대한 추가 변론 및 기타 서류를 45 부 작성하여 국제이사회에 제출한다. 검토 요청은 차기 국제이사회 정기회의 개최일 30 일 이전에 제출되고 본 이사회는 검토 및 조정위원회의 판정 및 항의자나 답변자가 제시한 문서, 추가 변론 및 기타 서류를 검토하여 회의 후 60 일 이내 판정을 내린다. 상기 요청이 차기 정기회의 30 일 전에 제시되지 않을 경우, 국제이사회는 차기 회의에서 다룰 권한을 가진다.

국제이사회 판정은 최종적이며 항의자나 답변자에 대해 구속력을 발효한다.

추가 규정

- (1) 국제이사회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항의 한 단계나 수단계를 생략, 촉진할 권리를 보유한다. 항의자 혹은 답변자는 어느 항의 단계든 그 한 단계나 수단계를 생략하도록 이유를 제시하는 요청서를 법률부로 제출할 수 있으며 요청서는 국제이사회 의 헌장 및 부칙위원회의 재량에 의해 검토 및 결정할 것이다.
- (2) 특정 항의 단계의 결단 담당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소속 과정상 기한을 단축 또는 연기할 수 있다.
- (3) 검토 및 조정위원회 멤버들은 국제협회 감사규정에 의해 검토 및 조정위원회의 임무 처리상 야기된 경비를 상환 받을 수 있다.
- (4) 항의자 또는 답변자가 항의과정 동안 행정상이나 재판상의 판결을 추구하지 않는다.
- (5) 각 당사자는 회의 전에 상대측이 제출한 서류를 고찰할 기회를 부여 받고 추가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증거로서 제출한 모든 서류를 적어도 회의 개최 10 일 전에 검토 및 조정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 (6) 항의자와 답변자는 각 항의 단계마다 변호사를 대표할 수 있다